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6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0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60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5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1)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위수현

별지

1)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별지 내용통지서 내용을 피고에게 주장하는 청구원인으로 추가 진술하였다.